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명옥·김기웅·조은희
박충권·엄태영·이현승
김정재·박대출·박성훈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
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식별장치(어선의 위치, 항로, 속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
동으로 송·수신하여 다른 어선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58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식별장치를 작
동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서 정하는 어장에</u> <u>출입하려는 어선은 해양수산부</u> <u>령으로 정하는 자동식별장치</u> <u>(어선의 위치, 항로, 속도 등에</u> <u>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u> <u>신하여 다른 어선 등과 공유할</u> <u>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u> <u>같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u> <u>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7. (생 략) ⑥ · ⑦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u> <u>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식별장</u> <u>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